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6 | 2025.11.10 (2025.11.03~2025.11.0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부>는 ①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②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③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 · 고부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 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는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국내복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4인)**」,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국방위>, <산자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및 <예결위> 등 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산업통상부) ····· 7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6-'32)」 설명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 10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1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부) ····· 1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 1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 1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 1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 1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 15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15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 16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 1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 21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 21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 ····· 21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0인) ····· 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22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 23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0인) ····· 23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 2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 24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 2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4인) ·····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25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2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27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 27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 27
- 모빌리티기본법안(윤종오의원 등 12인) ····· 28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조세]**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과 사후 대응 방안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 설비조정 : 공급과잉 품목은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 통상대응 : 해외 수출장벽 및 불공정 철강 수입에 체계적 대응 - 고부가 · 저탄소 :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위한 2천억원 지원, 저탄소 전환 지원 - 상생협력 : 지역경제 안전망, 안전관리 강화, 철강-원료-수요산업 협력	**2025-11-04**

산업통상부는 ①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②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③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음

첫째,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에 나섬

정부가 제시한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경쟁력이 약화되어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품목 중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예: 형강・강관),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 ②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수입재 침투율이 낮다면(예: 철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고, 수입재 침투율이 높으면(예: 열연・냉연・아연도)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보아 필요시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섬 ③ 경쟁력이 유지되어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예: 전기강판・특수강)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섬

3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함. 먼저「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 및 이와 연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국회 협의를 거쳐「철강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임. 형강・강관은 시장자율적 조정 노력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 기타 공급과잉 품목들은 높은 수입재 침투율을 고려하여 수입재 대응을 우선한 이후 그 효과를 살펴 단계적 설비규모 조정을 검토

둘째, **해외 수출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감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 제안(proposal)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하며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특히, 지난 9.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4천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1천5백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적시 교환을 통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섬. 수입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함

셋째,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해 나감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감. 아울러,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기재부와 협업 하에 검토해 나갈 계획임

넷째, **그린경쟁력 확충을 뒷받침**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함.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감. 근본적으로는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올해 6월 8.1천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감

다섯째,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강화**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검토)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 아울러,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 및 연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6-'32)」 설명회 개최** - 첨단 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0억원 규모 투자 - 세계 최초 또는 최고수준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 국산화 달성 목표	**2025-1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밝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임.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음.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되어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 102건),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신장용 혈액여과기의 국산화, 세계 최초 AI 기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11월 5일(수) 13:00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사업설명회는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신규과제 참여 방안 및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정부는 "이번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인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04 시행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11-03 시행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관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그 적용 대상을 종전의 자동차에서 건설기계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범위에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04 시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권한, 출연금이 지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등에 관한 권한과 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한 권한,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5. ~2025.12.15.

과세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중과세 예외 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및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전화: 044-205-3811, 팩스: 044-204-8968)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5. ~2025.12.1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하고,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의 평가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37, 팩스: 044-204-896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5. ~2025.12.15.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05-3852, 팩스: 044-204-8970)

산업통상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5.11.5. ~2025.12.15.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국내복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요건을 강화함

※ 문의처 :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2)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5. ~2025.12.15.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차량선택 폭 확대 등 편익 증대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과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되 자동차의 운행가능거리를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전화: 044-201-3819, 팩스: 044-201-555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2025-11-04 발의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동시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였음

나아가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인격표지영리권의 인정 여부,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 아니라더라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권리를 창설하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025-11-04 발의

현행법은 영업양도와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모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74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2025-11-03 발의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2025-11-03 발의

현행법은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계약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를 각각 정의하고 있음.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규모는 2021년 6조 6,649억원에서 2025년 3월 기준 10조 3,34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습적인 폐업이나 등록취소 행위로 인해 고객들이 선수금의 환불이나 보장 등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음.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5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선수금 사고 피해자 수는 16만 3천여명, 피해액의 합계는 1,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무엇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의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수금의 목적 외 유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상시 감사의 근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공유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대응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 피해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수금을 추가로 정의함과 동시에 선수금에 대한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배주주 등을 향한 신용공여 행위의 한도 제한을 두며,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을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이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환경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2조의3, 제27조의4,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7조의2 신설 및 제2조·제27조·제34조·제35조·제46조·제48조·제53조)**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025-11-03 발의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025-11-05 발의

현행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45조제2항)**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2025-11-06 발의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8제1항,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025-11-04 발의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기업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인권·환경실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거나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2025-11-04 발의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미국의 경우에는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최근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음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8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현행 상속세 공제수준은 ’97년 이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가와 자산가격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공제수준은 변화 없이 유지된 것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1%에 대해 과세하던 것에서 ’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가 납부하는 상황이 되었음. 특히 서울지역은 전체 피상속인의 15.5%(’24년 기준)가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 세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상속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의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은 방지하고 남은 가족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세 공제 수준을 상향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권을 형성해온 기여도가 보다 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배우자 최저 공제금액이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4조 및 제28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2025-11-06 발의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현행 법령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 토지는 시험·연구·검사용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2005년 이후 생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는 입법불비로 인해 여전히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실정임

현재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남아있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경우 자율차용 주행로봇시스템 등 구축, 톨게이트, 회전교차로 등 반복·재현 시험환경 제공,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을 고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품 중소기업들에게 기초 연구·실증·양산 연결 단계를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비용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중견 부품업체도 세계적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의 집약체로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자동차의 시험·연구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시험·연구의 용도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과세대상 구분을 차별없이 동일(별도합산과세대상)하게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안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5-11-03 발의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4호·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2025-11-04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2025-11-0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2025-11-03 발의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창의적 기획과 혁신적 제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	2025-11-04 발의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주력산업임. 다만,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공정 수입재 범람 등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또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한 EU CBAM 등 대내외 탄소중립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14) 및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7)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5-11-04 발의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생산·수출·투자·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장기적일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들이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안(2025. 6. 11) 및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6)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025-11-05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2025-11-07 발의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0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0인)	2025-11-07 발의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은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전력 공급 부담이 심화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전력 계통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새만금권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송전망 용량 한계와 전력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이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생활 부문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역 내 전력 활용률이 낮고, 생산 전력이 외부로 송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송전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 에너지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산업·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송전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2025-11-06 발의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자 함 **(안 제18조, 제18조의6,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6조)**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2025-11-06 발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안 제47조, 제47조의5 신설, 제95조 및 제98조)**

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2025-11-06 발의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고시로 해당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불법 영업 감소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4인)	2025-11-04 발의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11-04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158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5-11-04 발의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자 함 (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 **(안 제49조제1항)**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56조제2항·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권한·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제출함

이와 함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둔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통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1-06 발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제4항·제5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2025-11-06 발의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제품을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제조·수입·판매자가 설치와 동시에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며, 50개 품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회수 의무 적용 품목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에 따라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도 무상 회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 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6조의4제5항 후단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2025-11-03 발의

최근 인공지능,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를 넘어 레벨4(고도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실증사업 수행 등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의 전격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 독려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 **(안 제23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모빌리티기본법안(윤종오의원 등 12인)	2025-11-04 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통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통정책에서 소홀히 다뤄온 교통이동권의 보장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교통 관련 법률들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권리로 보지 않고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교통의 공급자를 민간영역의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빌리티 정책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교통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기존 교통정책의 균형을 모색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2025-11-06 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관리체계의 미비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예결소위	11/12(수) 10:00	- 예산안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11/11(화) 10:30	- 예산안 상정
기재위	전체회의	11/12(수) 10:00	- 예산안 상정, 법안 상정
과방위	전체회의	11/12(수) 10:00	- 예산안 심사
문체위	전체회의	11/11(화) 14:30	- 예산안 상정
산자위	전체회의	11/11(화) 14:00	- 예산안 상정, 통상현안 보고
복지위	전체회의	11/10(월) 09:00	- 예산안 상정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11/12(수) 15:00	- 예산안 상정
국토위	전체회의	11/11(화) 11:00	- 예산안 상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10(월) 14:00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윤종군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1(화) 10:00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	송기헌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11(화) 10:00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최형두·박정하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1/13(목) 07:30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	최형두·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3(목) 09:00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한미조선해양협력**	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1/13(목) 14:00	**미래세대,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말하다: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	김태선·김남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11/10(월)	**「Data+」 제21호(2025-21호) 발간**	국회도서관	
	11/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4호(2025-21호) 발간**		
	11/12(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1호(2025-21호) 발간**		
	11/12(수)	**「금주의 서평」 제753호(2025-44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5(수)	**「Data&Law」 제37호(2025-12호)**	국회도서관	
	11/5(수)	**「금주의 서평」 제752호(2025-43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3(월)	건설/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1/4(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11/4(화)	조세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과 사후 대응 방안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